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
----------	----

제출년월일 : 1998. 8.20.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분뇨관련 수거대행업체의 물량격감, 인건비 및 운영경비 상승등 인상요인 누적에 대한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수료 상향 조정
- 나.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조례의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
- 다. 행정절차법 개정('98. 1. 1부) 으로 해당규정 삽입

2. 주요골자

- 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확조 청소수수료 상향 조정
 - 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 10³ 당 당초 200원 → 320원 (60% ↑)
 - ② 정확조 청소 수수료
 - 당초 : 기본료 (0.75㎡당) 16,200원 → 17,330원 (7% ↑)
 - 당초 : 초과료 (0.1㎡당) 1,170원 → 1,280원 (10% ↑)
- 나.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환경부 예규 제167호 규정에 따라 조정개정
-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을 명문화함.

3. 관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 환경부 예규 제167호 ('97. 12. 4)
- 행정절차법 제21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별표2” 를 “별지1” 과 같이한다.

제17조 제1항중 “별표3” 을 “별지2” 와 같이한다.

제17조 제2항중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시에는 위반사실,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제8조 제1항 관련)

[별표2]

구 분	부과기준	수 수 료	적용기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10ℓ	32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정화조청소 수 수 료	기본(0.75㎡이하)	17,33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0.1㎡당)	1,28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할증 (개별 청소시)	기본 및 초과료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금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2 ”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다.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라.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마.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 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 오수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 제24조제4항)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 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300	5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400	6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500	700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400	600	800
(2) 1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400	6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500	7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400	600	800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500	700	1000
나. 합병정화조			
(1)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2)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300	400
(3)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4)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400	500	6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다. 단독정화조			
(1) 처리용량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2) 처리용량 10㎡이상 50㎡미만인 경우	200	300	400
(3) 처리용량 5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0	400	500
라. 축산폐수처리시설 (신고대상)			
(1) 방류수 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2) 방류수 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3)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4)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	500	700	1000
2.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법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			
가. 설치신고 미이행자			
(1)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400	500
(2) 합병정화조의 경우	200	300	400
(3) 단독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나. 변경신고 미이행자			
(1)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400	500
(2) 합병정화조의 경우	200	300	400
(3) 단독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다. 폐쇄신고 미이행자			
(1)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0	300	400
(2) 합병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3) 단독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3.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 자(법 제12조, 제26조 또는 제33조 제2항)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1)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00	400	500
(2) 합병정화조의 경우	400	600	800
(3)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4)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700	1000
(5)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200	300	5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자			
(1)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2) 합병정화조의 경우	800	800	800
(3)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000	1000	1000
(4)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5)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300	500	500
4.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한 자(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22조, 제27조)			
가.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합병정화조의 경우	800	800	800
다.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000	1000	1000
라.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5.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법제13조제2항)	500	700	1000
6.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 제14조 제2항, 제28조 제3항 또는 제33조의2 제1항)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1)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2,0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500	700	1000
(2)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이상	300	600	1000
(3)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분기1회 이상	500	700	1000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5㎡미만인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100	300	500
(2) 처리용량이 5㎡이상 10㎡미만인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0	400	600
(3) 처리용량이10㎡이상인 단독정화조,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인경우	500	700	1000
(4)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700	1000
다. 1일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5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의 방류수를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00	600	10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후
라. 악취가 심하게 발산되거나 해충이 외부로 번식·발생이 되는 경우	300	500	700
마.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허가대상)	100	200	500
바. 기타 오수처리시설 운영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200	300	500
7.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법 제33조 제3항)	500	700	1000
8.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한자(법 제15조 제1항)	500	700	1000
9.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 제2항, 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300	400	5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00	300	400
10. 분뇨등관련영업자의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법제35조 제3항)	300	400	500
11. 분뇨등관련영업의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법제35조 제3항)			
가.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나.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개별청소이행통지 기간경과 후 15일 이내 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천재지변등	300	500	7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2. 분뇨등관련영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제35조의2 제2항)	300	400	500
13.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등관련영업자(법 제35조3의 제1항)	500	700	1000
14.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제2항)	300	400	500
15.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제3항)	500	700	1000
16.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 제1항)	500	700	1000
17.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분뇨등관련영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44조)	300	400	500
18. 분뇨등관련영업자로서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5조)	300	400	500
19. 사업자,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 하는자, 분뇨등관련영업자로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법 제46조 제1항)	300	400	500
20.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3 제2항)	200	300	500

[별표2]

신 · 구조문대비표

분뇨수집 · 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제8조 제1항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분뇨수집 · 운반수수료	10 ℓ	200원	○ 부산광역시 분 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 례에 의한분뇨 처리비가 포함 된 금액임 ○ 배출자로부터 수집 · 운반하 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10 ℓ	320원		
정화조청소 수수료	기본(0.75 ㎡이하)	16,200원	○ 부산광역시 분 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 례에 의한 분 뇨처리비가 포 함된 금액임 ○ 청소된 오니 (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 수한다. ○ 요금계산시 100원미만은 버린다.	기본(0.7 5㎡이하)	17,330원	
	초과(0.1 ㎡당)	1,170원		초과(0.1 ㎡당)		1,280원														
	할증(개별 청소시) 5%	기본 및 초과료의 5%	(.....)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 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2.개별기준				2.개별기준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p>1. <u>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 대상)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제5조)</u></p> <p>가. 오수정화시설</p> <p>(1) 1일 처리용량이 100㎡ 미만인 오수정화시설</p> <p>(가) 방류수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p> <p>(나)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p>	<p>100</p> <p>300</p> <p>300</p>	<p>300</p> <p>500</p> <p>500</p>	<p>500</p> <p>700</p> <p>700</p>	<p>1. <u>오수처리시설 또는</u></p> <p>.....</p> <p>.....</p> <p>(<u>법제5조,제24조제4항</u>)</p> <p>가.</p> <p>(1)</p> <p>.....</p> <p>(가)</p> <p>.....</p> <p>(나)</p> <p>.....</p> <p>.....</p>	<p>200</p> <p>400</p> <p>200</p>	<p>400</p> <p>600</p> <p>400</p>	<p>600</p> <p>600</p> <p>600</p>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 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700	900	(다)	300	500	7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900	1000	(라)	400	600	800
(2) 1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2)			
(가) 방류수수질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400	600	(가)
(나) 방류수수질기준 50% 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400	600	800	(나)	300	500	7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 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600	800	1000	(다)	400	600	8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800	900	1000	(라)	500	700	1000
(신설)				나. 합병정화조			
(신설)	-	-	-	(1) 방류수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신설)	-	-	-	(2)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300	400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신설)	-	-	-	(3) 방류수수질기준 100% 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신설)	-	-	-	(4) 방류수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400	500	600
<u>나. 정화조</u>				<u>다. 단독정화조</u>			
(1) 처리용량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0	300	400	(1)	200	300
(신설)	-	-	-	(2) 처리용량10㎡이상 50㎡미만인 경우	200	300	400
(2) 처리용량 1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0	500	600	(3)50㎡이상인	400	500
<u>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신고대상)</u>				<u>라. (.....)</u>			
(1) 방류수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300	400	(1)	200	300
(2) 방류수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500	600	(2)	400	500
(3)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700	800	(3)	600	700
(4) 방류수수질기준 1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900	1000	(4)	500	700	...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2. <u>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u>				2. <u>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법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u>			
가. 설치신고 미이행자				가.			
(1)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신설)	1000	1000	1000	(1)	300	400	500
(2) 정화조의 경우	200	500	500	(2) 합병정화조의 경우	200	300	400
				(3) 단독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나. 변경신고 미이행자				나.			
(1)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신설)	500	1000	1000	(1)	300	400	500
(2) 정화조의 경우 (신설)	-	-	-	(2) 합병정화조의 경우	200	300	400
	100	300	500	(3) 단독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다. 폐쇄신고 미이행자			
				(1)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0	300	400
				(2) 합병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3) 단독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3. <u>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등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 자(법 제12조,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u>				3. <u>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 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 (법 제12조,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u>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자				가.산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00	400	500	(1) 단독정화조,
(신설)				(2) 합병정화조의 경우	400	600	8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500	500	500	(3)	700	1000
(3)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500	500	(4)	700	1000
(4)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200	300	500	(5)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나.사용한 자			
(1) 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1) 단독정화조,
(신설)	-	-	-	(2) 합병정화조의 경우	800	800	8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3)	1000	1000	1000
(3)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4)
(4)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300	500	500	(5)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4. <u>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 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한 자(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또는 제27조)</u>				4. <u>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u>(법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22조, 제27조)			
가. <u>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의 경우 (신설)</u>	500	500	500	가. <u>단독정화조,.....</u>
나. <u>오수정화시설의 경우</u>	800	800	800	나. <u>합병정화조의 경우</u>	800	800	800
다. <u>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대상)의 경우 (신설)</u>	1000	1000	1000	다.	1000	1000	1000
				라.
				5. <u>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법제13조제2항)</u>	500	700	1000
5. <u>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가이축산폐수정화조를 관리</u>				6. <u>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가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u>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1) 1일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이 2,000인 이상인 <u>정화조</u> 는 6월마다 1회이상	100	200	500	(1) <u>단독정화조</u>	500	700	1000
(2)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이상	200	200	500	(2)	300	600	1000
(3) 허가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분기1회이상	300	500	1000	(3)	500	700	...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1) 처리용량이 10㎡미만인 <u>정화조·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신고대상)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u> 의 경우	100	300	500	(1)5㎡미만인 <u>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u>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2)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신설)	300	500	800	(2)5㎡이상10㎡미만인 단독정화조,합병정화조 · 오수정화시설.....	200	400	600
(3) 축산폐수처리시설(허가 대상)의 경우	500	700	1000	(3) 처리용량이 10㎡이상인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인 경우	500	700	1000
다. 1일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500인 이상인 정화조의 방류수를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4)
라. 악취가 발산되거나 해충이 외부로 번식·발생이 되는 경우	500	1000	1000단독정화조.....
마.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허가대상) (신설)	100	200	500
(신설)	-	-	-	바. 기타 오수처리시설 운영 시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200	300	500
(신설)	-	-	-	7.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법제33조 제3항)	500	700	1000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제15조제1항)	500	700	1000	8.위반한 자(법제15조제1항)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제24조제4항)				9.(법제24조제2항,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가.	300	400	5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신설)	300	500	800	나.	200	300	400
	-	-	-	10. 분뇨등관련영업자의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 신고한 자(법제35조제3항)	300	400	500
8.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영업자(법제35조제3항)				11. 분뇨등관련영업의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법제35조제3항)			
가.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가.
나.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개별 청소이행통지 기간경과 후 15일 이내 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천재지변등	100	300	500	나.	300	500	700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신설)	-	-	-	12. 분뇨등관련영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제35조의2제2항)	300	400	500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법제35조제6항)	300	500	1000	13. 분뇨등관련영업자(법제35조3외제1항)	500	700	...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42조제2항)	300	500	1000	14.	400	500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제42조제3항)	200	400	1000	15.	500	700	...
12.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제43조)	500	800	1000	16.	700	...
13.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제44조)	300	500	1000	17.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 활용하는 자, 분뇨등관련영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	...	400	500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4.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영업자 (법제45조)	300	500	1000	18. 분뇨등관련영업자로서 휴 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법제45조)	...	400	500
1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제46조제1항)	300	500	1000	19. 사업자, 분뇨 또는 축산 폐수를 재활용 하는자,분 뇨등관련영업자로서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보고를 한 자(.....)	...	400	500
16.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아니한 자 (법제25조의3제2항)	200	300	500	20.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신고 하지 아니한 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 (과태료 부과) ①생략</p> <p>②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등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 (과태료 부과) ①현행과 같음</p> <p>②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시에는 위반사실, 위반내용, 과태료금액등을 통지하여야 한다.</p>